

해양조사 · 정보업

[]양도 · 양수
[]인수

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	10일
승계하는 자	대표자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상호	전화번호		
	업종	해양조사 · 정보업 등록번호		
	주된 영업소 소재지			
승계받는 자	대표자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상호	전화번호		
	업종	등록번호		
	주된 영업소 소재지			

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 · 정보업의 양도 · 양수 또는 인수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양도 · 양수계약서 사본(해양조사 · 정보업을 양도 ·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	2.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	
	3.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(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합니다)	
	4. 보유하고 있는 시설 ·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	
	5. 시설 ·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
	6. 해양조사 · 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(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)	
	7. 지위를 승계받는 자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)의 사진 2매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법 제32조에 따른 결격사유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												
신고서 제출	→	접 수	→	민원사무 처리부등재	→	서류심사 및 실태조사	→	기안 · 결재	→	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	→	발 급
신고인		국립해양조사원		국립해양조사원		국립해양조사원		국립해양조사원		국립해양조사원		